

제312회 정례회
2012.07.13.(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07.13(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 2012년 06월 03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06월 08일

라. 상정일자 :

○ 2012년 06월 13일,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보류

○ 2012년 07월 05일,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구명회)

가. 제안이유

교육장에게 기 위임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연계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임(안 제4조)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학교급식시설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임(안 제5조제 29항 단서)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왕년)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 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교육감 권한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필요성, 기대효과, 수임능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7. 5. 박상필 교육의원

○ 수정요지 :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의 시행일자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리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안 부칙의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5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학교급식법」 제18조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

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

라. 「학교급식법」 제2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발신명의)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p>	<p>제 4 조 (발 신 명 의)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3 조 ----- -----.</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 28. (생 략)</p> <p>29. <u>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u></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p> <p>1. ~ 28. (현행과 같음)</p> <p>29. <u>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u></p> <p>가. 「학교급식법」 제18조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p> <p>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p> <p>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p>

현행	개정안
	<p>라. 「학교급식법」 제2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p> <p>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p>

關係法令拔萃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46호, 2010.2.26, 일부개정]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교급식법[시행 2012.3.21] [법률 제11384호, 2012.3.21, 타법개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농산물품질관리법」·「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10.3.17>

⑤ 삭제 <2010.3.17>

⑥ 삭제 <2010.3.17>

□ 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 2011.4.5] [대통령령 제22843호, 2011.4.5, 일부개정]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